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시 탄소 배출 저감계획 포함》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7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제220687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에 탄소 배출 저감계획 포함 (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2

I. 김소회의원 대표발의(제220687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소회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4.

다. 회 부 일 : 2024. 1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3. 검토의견

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에 탄소 배출 저감계획 포함(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략) <u><신설></u>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건축물의 해체·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획</u> 1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8. (생략) <u><신설></u> 1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u>건축물의 해체·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획</u> 20.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정부는 '20.12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¹⁾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²⁾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개정안은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³⁾(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특별정비계획⁴⁾ 수립 내용에 건축물의 해체·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

1) 2022.3.25. 시행, 환경부 소관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⑨ (생략)

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에서 “수립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기 신도시⁵⁾와 같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⁶⁾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시 대규모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탄소 배출 저감계획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정비는 탄소중립 실천 및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현행법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⁷⁾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을, 제12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⁸⁾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시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이미 탄

5) 19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중동(부천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에 약 30만 호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었음.

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 개정 필요성이 낮으며, ‘건축물의 단계별 탄소배출량 저감’은 기술 표준, 법령·제도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건축물의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 관련 국토교통부 검토 】

- 건축물의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자립률)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17.1~, 「녹색건축법」 근거)를 운영 중이나,
 - 개별 건축물의 해체·건설 과정의 탄소배출량 측정 방법·기술, 평가기준, 배출량 저감기술 관련 표준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학계에서 논의 중인 단계)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주택협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 도입은 사업 추진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화(’25.6.30.시행) 등으로 기존 규제가 이미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한주택건설협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⁹⁾ 2020년부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 추가적인 탄소배출 저감계획 의무화 규정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경기주택도시공사	현행법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제12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와 개정안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문 의 처
02)6788-5581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